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태호)

주요내용

가.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함.

(안 제16조제2항)

나.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를 조달청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6조제4항)

검토요지

- 물품 소요조회는 불용되는 물품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, 물품 불용 기관과 수요기관과의 사이에 물품 소요조회의 활용성이 매우 낮고, 공문을 통한 물품소요 조회시 평균 138개 기관에 대하여 공문작성, 배포, 접수 및 열람 등으로 행정력이 과다하게 소모되고 있으며, 물품 소요조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만 실시하여 민간 공익기관에서 정보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불용품 중 활용가능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도록 하고(개정안 제16조제1항)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조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(개정안 제16조제4항)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(기능적·별정적 및 고용적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를 삭제한다.

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고,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) ①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액중 결손처분(부분결손 제외)된 미수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.

1.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: 순징수액의 100분의 10

2.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: 순징수액의 100분의 7

3.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3년 이상인 세액의 경우 : 순징수액의 100분의 5

②제1항의 순징수액이라 함은 총징수액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본 징수경비 및 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.

제4조제4항제2호 중 “제3조”를 “제3조 및 제3조의2”로 하고, 제3호 중 “제3조의2”를 “제3조의3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제3호 각호”를 “제3조 및 제3조의2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사무의 위임) ①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.

1.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: 당해 기관의 장

2.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물품 : 시의회사무처장

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서울특별시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
제16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·축산물 또는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.

제16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6조제3항 중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중 행정관리국(회계과)란을 삭제한다.

서울특별시 시민 창안제도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 창안제도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직접 또는 우편”을 “직접·우편 또는 인터넷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시정개발담당관”을 “조직제도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제도개선담당사무관”을 “시민창안업무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